

13. 벨리즈(Beliz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 산정 방법	8개 소득구간에 따라 정액 보험료 납부	11개 소득구간에 따라 정액 보험료 납부	소득구분 세분화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B\$300 / B\$70	B\$420 / B\$70	상한 B\$80 ↑
최고 보험료 / 최저 보험료	(근로자) B\$9.55 / B\$0.83 (사용자) B\$16.05 / B\$3.57	(근로자) B\$15.68 / B\$0.88 (사용자) B\$17.05 / B\$3.80	(근로자) 6.13 / 0.05 ↑ (사용자) 1 / 0.23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00주	500주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79년(사회보장), 2003년(사회부조 개정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19~60세의 근로자(공공 부분 포함) 및 자영자
 - **임의가입** : (노령급여, 유족급여, 장애비에만 해당) 근로활동을 중단한 65세 미만의 벨리즈 거주자로, 근로자로서 150주 이상 납부기간이 있고 노령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한 적이 없는 사람
 - **적용제외** : 임시근로자, 근로시간이 주당 8시간 미만인 근로자, 군인, 65세 이상 근로자, 60세~64세 노령연금 수급자로 다시 근로를 시작한 경우
- **사회부조** : 취약계층으로 벨리즈 시민 또는 2019년 1월 12일 이전에 노령사회연금을 받고 있었던 영구 거주자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주간 보험료는 임금등급(11등급)에 따라 다름
 - 주간 소득이 B\$70 미만인 경우, B\$0.83
 - 주간 소득이 B\$70~B\$109.99인 경우, B\$1.43
 - 주간 소득이 B\$110~B\$139.99인 경우, B\$2.07
 - 주간 소득이 B\$140~B\$179.99인 경우, B\$3.35
 - 주간 소득이 B\$180~B\$219.99인 경우, B\$5.05
 - 주간 소득이 B\$220~B\$259.99인 경우, B\$6.75
 - 주간 소득이 B\$260~B\$299.99인 경우, B\$8.45
 - 주간 소득이 B\$300~B\$339.99인 경우, B\$10.15
 - 주간 소득이 B\$340~B\$379.99인 경우, B\$11.89
 - 주간 소득이 B\$380~B\$419.99인 경우, B\$13.73
 - 주간 소득이 B\$420(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) 이상인 경우, B\$15.68
- ※ 상한주간소득은 2020년 1월 6일 B\$480, 2021년 1월 4일 B\$520으로 상향조정 예정
- 총 보험료율(근로자와 사용자)은 8.5%(2020년 1월 6일에 9%, 2021년 1월 4일에 10% 상향 예정)
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 재원으로라도 사용
- 보험료는 월 납부
- 임의 가입자는 노령급여, 유족급여, 장제비에 대해서 B\$1.76~B\$10.24의 주간 보험료 납부(보험료는 기존 납부된 보험료의 최고 3년에 기초하여 산정)
- 근로를 재개한 60~64세의 노령연금 수급자와 65세 이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신고소득의 7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 : 주당 B\$55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 : 월당 B\$320
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 재원으로라도 사용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주간 보험료는 임금등급(11등급)에 따라 다름
 - 주간 소득이 B\$70 미만인 경우, B\$3.80
 - 주간 소득이 B\$70~B\$109.99인 경우, B\$6.22
 - 주간 소득이 B\$110~B\$139.99인 경우, B\$8.98
 - 주간 소득이 B\$140~B\$179.99인 경우, B\$10.25

- 주간 소득이 B\$180~B\$219.99인 경우, B\$11.95
- 주간 소득이 B\$220~B\$259.99인 경우, B\$13.65
- 주간 소득이 B\$260~B\$299.99인 경우, B\$15.35
- 주간 소득이 B\$300~B\$339.99인 경우, B\$17.05
- 주간 소득이 B\$340~B\$379.99인 경우, B\$11.89
- 주간 소득이 B\$380~B\$419.99인 경우, B\$13.73
- 주간 소득이 B\$420(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) 이상인 경우, B\$15.68
- ※ 상한주간소득은 2020년 1월 6일 B\$480, 2021년 1월 4일 B\$520으로 상향조정 예정
- 총 보험료율(근로자와 사용자)은 8.5%(2020년 1월 6일에 9%, 2021년 1월 4일에 10% 상향 예정)
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 재원으로 쓰임
- 사용자의 보험료 중에서 B\$2.60는, 65세 이상 근로자와 60세~64세 노령연금 수급자로 다시 근로를 시작한 사람의 모든 임금 등급에 대한 산재급여 재원으로만 쓰임
- 보험료는 월 납부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, 단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65세 도달
-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를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이 500주 이상
 - 질병, 출산, 장애, 일시 산재급여 또는 영구 완전장애산재급여를 받은 완성된 납부대상 기간(매주)은 보험료 납부로 인정
- 퇴직 조건 불필요
- 조기연금 : 60세 도달,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를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이 500주 이상, 65세까지는 고용관계 종료 필수

○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
-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인 60세 도달자

○ 노령사회연금(비기여 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남성 67세 이상, 여성 65세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※ 2019년 1월 이후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연금 수령 가능(이전에 노령사회연금을 받고 있었던 수급자는 계속 수급 가능)

○ **장애연금(사회보험)**

- 60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고, 1981년 이후 150주 이상 납부한 사람
- 장애 발생 당해연도 이전 연속 5년 중 250주 이상의 납부기간을 포함해야 하고, 장애 발생 해당 주 직전 13주 중 5주의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을 포함해야 함
 - 질병, 출산, 장애, 일시산재급여 또는 영구완전장애산재급여를 받은 완성된 납부대상 기간(매주)은 보험료 납부로 인정
 - 의료위원회에서 장애 등급 판정

○ **장애일시금(사회보험)**

-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6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진 60세 미만 자
- 의료위원회로부터 장애 등급 판정함

○ **유족연금(사회보험)**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
- 수급권자
 -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사망자와의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, 50세 이상인 여성 배우자(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- 3년 이상 사망자의 부양가족이었던 남성 배우자
 - 사망자와 연속 5년 이상 함께 살았던 동거인
 - 16세(정규 학생 21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의 자녀
 - 다른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, 55세 이상의 피부양 부모

○ **유족일시금(사회보험)**

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위한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
- 수급권자
 -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사망자와의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, 5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여성 배우자
 - 3년 이상 사망자의 부양가족이었던 남성 배우자
 - 사망자와 연속 5년 이상 함께 살았던 동거인
 - 16세(전업 학생 21세, 장애는 연령제한 없음) 미만의 자녀
 - 다른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, 55세 이상의 피부양 부모

○ **장제비(사회보험)**

- 사망자가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
- 배우자 또는 16세(정규 학생 21세) 미만 피부양 자녀의 사망시 150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

○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자의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30% + 750주까지는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소득의 2%씩 가산 + 750주를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소득의 1%씩 가산하여 지급(최대 지급률 60%까지)
 - 평균 적용 주간소득 : 최고 3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
 - ※ 최대 적용 주간소득은 B\$440(2020년 1월 6일 B\$480, 2021년 1월 4일 B\$520으로 상향조정 예정)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, 65세 전에 소득활동 재개 시 연금 중단
- 최저 주간 연금액 : B\$47
- 최고 주간 연금액 : 가입자 주간 평균 소득의 60%
- 연금액은 4주마다 지급

○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다음 중 더 높은 금액 지급

-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6배에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
(최고 소득구간 평균 적용 주간소득 X 6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- 적용 주간소득의 합계를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나누고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의 2.5배
(2.5 X 적용 주간소득의 합계 ÷ 보험료 납부기간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 - 평균 적용 주간소득 : 최고 소득 구간 3년을 기준으로 계산
- 최저 노령일시금 : B\$800

○ 노령사회연금(비기여 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B\$100

○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인 경우, 가입자의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30% 지급;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미만인 경우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25%
 - 주간 평균 적용소득 : 최고 3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
- 최저 주간 연금액 : B\$47
- 최고 주간 연금액 : 가입자 주간 평균 소득의 60%
- 연금액은 4주마다 지급

○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다음 중 더 높은 금액 지급

-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6배에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
(최고 소득구간 주당 평균 적용소득 X 6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- 주간 적용소득의 합계를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나누고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의 2.5배

(2.5 X 주간 적용소득의 합계 ÷ 보험료 납부기간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
- 평균 적용 주간소득 : 최고 소득 구간 3년을 기준으로 계산
- 최저 장애일시금 : B\$800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66.7%를 지급
- 고아연금 : 자녀 1인당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 지급; 장애가 있는 경우 40% 지급
- 피부양부모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40% 지급
- 최저연금액 : 주당 B\$47(유족 수급권자에게 분할 지급)
- 연금액은 4주마다 지급
- 모든 유족연금의 총합이 사망자 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는 없음

○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다음 중 더 높은 금액 지급

- 주간 평균 적용소득의 6배에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
(최고 소득구간 주간 평균 적용소득 X 6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 - 주간 적용소득의 합계를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나누고 보험료 납부기간 50주의 수를 곱한 금액의 2.5배
(2.5 X 주간 적용소득의 합계 ÷ 보험료 납부기간 X 50주 단위 납부기간)
 - 평균 주간 적용소득 : 최고 소득 구간 3년을 기준으로 계산
 - 최저 유족일시금 : B\$800
- ※ 유족급여는 노령 또는 장애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될 수 있음

○ 장제비(사회보험)

- 가입자 사망 시 B\$1,500 지급
- 배우자 사망 시 가입자에게 B\$1,000 지급
- 피부양 자녀 사망시 가입자에게 B\$500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○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

- www.mof.gov.bz
- 전반적 감독

○ 사회보장위원회(Social Security Board)

- www.socialsecurity.org.bz
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